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외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08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필요성	3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7
2. 주요 사항별 검토	
가. 검토 기준	9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외문화유산 관리(안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12
다. 국외문화유산의 출처 확인 및 조치(안 제12조)	22
라. 과태료(안 제27조)	28
마. 기타 의견	29
※ 참고자료	3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춘생 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4. 25.

다. 회 부 일 : 2025.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외문화유산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다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활용 정책과 달리, 협상·매입·기증 등을 통한 ‘환수’나 현지에서의 ‘보존 및 활용’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그런데 국외문화유산 환수 등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활용 정책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함께 규정되어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불법·부당하게 국외로 반출된 국외문화유산을 환수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활용과 환수를 통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문화의 발전 및 인류문화의 공존·공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국가유산청장 등은 국외문화유산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출처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마. 국가유산청장은 국민이 국외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외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국외문화유산의 상호 협력과 국제교류를 위하여 국외문화유산협력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국외문화유산이 우리 민족문화를 홍보·선양하는데 활용되도록 노력하며, 국외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

사. 국외문화유산의 현황 및 출처 등에 대한 조사·연구 등 국외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을 설립함(안 제21조).

아. 누구든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할 수 있고, 국가유산청장 등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등을 예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4조).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필요성

- 제정안은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함)에 포함된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함임.
- 현행 문화유산법에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분류되던 방식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 부분이 빠지고, 제정안에서 ‘국외문화유산’이라는 독립된 항목으로 구성됨.

[제정안에 따른 문화유산 분류체계의 변화]

현 행		제 정 후	
문화 유산법	1. 유형문화유산	1. 유형문화유산	문화 유산법
	2. 기념물	2. 기념물	
	3. 민속문화유산	3. 민속문화유산	
	4. 국외소재문화유산	4. 국외문화유산	제정안

- 2011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군대로부터 약탈되었던 외규장각 도서 297권이 반환되었고, 같은 해 12월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던 우리나라 고도서 150종 1,205책(조선왕실의례 포함)이 국내로 환수되면서, 해외 소재 우리 문화유산의 국내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커졌음.
- 이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2012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고 해외 소재 문화유산의 환수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동안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음.
- 한편, 「문화유산법」은 국가유산 중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인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법률임.

- 그러나 국외문화유산은 공간적으로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문화유산과 달리 보존·활용 정책을 수립 및 집행, 협상·매입·기증 등을 통한 환수 정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제정안은 국외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보존·활용과 전략적인 환수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이 제21대국회¹⁾와 제22대국회²⁾에서 발의된 바 있음.

[국외소재 문화유산 현황(동산)]

※ 29개국 801개처 116,961건 247,718점

(2025. 1. 1. 기준)

연번	소장국	소장처(개처)		수량(건)	수량(점)	비율 (점수기준)
1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등	394	36,817	108,705	43.8826%
2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	171	38,121	65,860	26.5867%
3	독일	쾰른동아시아미술관 등	27	10,680	15,477	6.2478%
4	중국	고궁박물관 등	76	4,658	14,226	5.7428%
5	영국	영국박물관 등	32	7,949	12,778	5.1583%
6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11	3,935	6,215	2.5089%
7	러시아	국립동양미술관 등	7	2,029	5,384	2.1734%
8	캐나다	로열온타리오박물관 등	9	2,848	4,322	1.7447%
9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등	9	617	3,073	1.2405%
10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등	8	2,249	2,478	1.0003%
11	네덜란드	민족학박물관 등	6	1,292	1,973	0.7965%

- 1)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2021.7.5. 제출), 문체위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 회부(2021.9.13.), 임기만료 폐기
- 2)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2024.12.17. 제출), 문체위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 회부(2025.2.19.)

연번	소장국	소장처(개처)		수량(건)	수량(점)	비율 (점수기준)
12	오스트리아	빈민족학박물관 등	5	1,662	1,790	0.7226%
13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2	1,451	1,490	0.6015%
14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국립도서관	1	337	1,024	0.4134%
15	스위스	베른역사박물관 등	11	498	695	0.2806%
16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미술관 등	7	466	547	0.2208%
17	벨기에	예술역사박물관 등	4	344	402	0.1623%
18	헝가리	호프페렌츠아시아미술관 등	2	217	353	0.1425%
19	폴란드	바르샤바국립박물관 등	4	218	302	0.1219%
20	바티칸	아니마문디민족학박물관	1	274	298	0.1203%
21	스페인	민족학세계문화박물관 등	2	89	96	0.0388%
22	노르웨이	국립박물관 등	2	77	81	0.0327%
23	이탈리아	문명박물관 등	3	58	70	0.0283%
24	뉴질랜드	켄터베리박물관 등	2	34	36	0.0145%
25	그리스	코르푸아시아미술관	1	30	32	0.0129%
26	체코	나프르스텍박물관	1	7	7	0.0028%
27	슬로베니아	첼레시립박물관	1	2	2	0.0008%
28	싱가포르	싱가포르국립대학교박물관	1	1	1	0.0004%
29	이스라엘	이스라엘국립박물관	1	1	1	0.0004%

※자료: 국가유산청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 현황]

(2025. 1. 1. 기준) (단위: 점)

대상국	수량	공공(정부기관, 지자체 등)					민간(개인, 사립박물관 등)			
		계	협상	구입	기증	수사공조	계	협상	구입	기증
일본	6,719	6,119	2,978	80	3,061	0	600	0	328	272
미국	3,770	3,355	12	255	3,076	12	415	16	98	301
스페인	892	892	0	0	892	0	0	0	0	0
독일	727	701	18	1	682	0	26	21	5	0
프랑스	316	302	297	2	3	0	14	0	2	12
뉴질랜드	186	186	0	184	2	0	0	0	0	0

대상국	수량	공공(정부기관, 지자체 등)					민간(개인, 사립박물관 등)			
		계	협상	구입	기증	수사공조	계	협상	구입	기증
이탈리아	59	59	0	59	0	0	0	0	0	0
캐나다	20	20	0	0	20	0	0	0	0	0
호주	1	1	0	0	1	0	0	0	0	0
노르웨이	2	1	0	0	1	0	1	0	0	1
스위스	4	0	0	0	0	0	4	0	4	0
영국	16	6	0	2	4	0	10	0	10	0
합계	12,712	11,642	3,305	583	7,742	12	1,070	37	447	586

※자료: 국가유산청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본칙(7개 장, 27개 조문)과 부칙(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 제2장(국외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3장(국외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및 제5장(국외문화유산재단)은 「문화유산법」에서 국외문화유산에 관하여 규정된 제8장(6개 조문)³⁾과 국외문화유산에 관하여 적용되는 내용을 추출하여 제정안에 편입시키고,
- 국외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보존 및 환수·활용 차원에서 제정안

3) 「문화재보호법」 2010. 2. 4. 개정 당시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환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제3장(국외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과 제4장(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국외문화유산의 출처 확인, 과거 불법 반출·반입된 국외문화유산의 시효취득 불성립, 국외문화유산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국외문화유산의 홍보·선양, 국외문화유산의 교육 및 국외문화유산의 환수 등의 조문을 두었으며,

- 총칙(제1장)과 보칙·벌칙(제6장·제7장)은 일반적인 제정법의 입법체계를 따르고 있음.

[제정안의 구성체계]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2장 국외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3장 국외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제4장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	제5장 국외문화유산 재단	제6·7장 보칙 및 벌칙
목적 (제1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국외문화유산의 조사·연구 (제11조)	국외문화유산의 보존 (제15조)	국외문화유산재 단의 설립 (제21조)	공로자 예우 (제24조)
정의 (제2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	국외문화유산의 출처 확인 및 조치 (제12조)	국외문화유산의 홍보·선양 (제16조)	금전 등의 기부 (제22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25조)
기본이념 (제3조)	국회 보고 (제8조)	국외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제13조)	국외문화유산의 교육 (제1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	국외문화유산 협력망의 구축·운영 (제14조)	국외문화유산의 환수 (제18조)		과태료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환수에 대한 의견 청취 (제10조)		국제협력 및 협정 체결 등 (제19조)		
			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환수 활동의 지원 (제20조)		

2. 주요 사항별 검토

가. 검토 기준

- 현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전용기의원안과 동 제정안의 내용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은 검토를 생략하고, 주요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조항에 한하여 비교 검토하였으며, 검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에 대해 부처 의견이 새롭게 제시되었거나 변경·보완된 경우에는 보고서 마지막에 별도로 정리하였음.

[주요 검토 조항]

조 항	정춘생 의원안 (의안번호 2210108)	전용기 의원안 (의안번호 2206571)
제11조 (국외문화 유산의 조사·연구)	②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관련 기관에 자료 제 출 및 정보 제공 요청 가능 ③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재외공관에 조사 요 청 가능	②국가유산청장은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및 정보 제공 요청 가능 ④국가유산청장은 재외공관에 조 사 요청 가능
제12조 (국외문화 유산의 출처 확인 및 조치)	④불법적 수단으로 반출·반입된 경우 시효취득 불성립 명시 및 불법적 수단 정의	(해당 조항 없음)
제15조 (국외문화 유산의 보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전한 보존 노력 ②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보존 환경 개선 및 수리 비용 지원 가능	①국가는 온전한 보존 노력 ②국가유산청장은 수리 비용 지 원 가능 ③국가유산청장은 보존 환경 개 선 비용 지원 가능
제16조 (국외문화 유산의 홍보·선양)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홍보· 선양 노력 ②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전시관 등 설치 가능	①국가는 홍보·선양 노력 ②국가유산청장은 홍보·선양 비 용 지원 가능

	③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외동포 및 단체 활동 육성·지원 가능 ④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홍보·선양 비용 지원 가능	③국가유산청장은 전시관 등 설치 가능 ④국가유산청장은 재외동포 및 단체 활동 지원·육성 가능
제18조 (국외문화유산의 환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수 노력 ③환수된 문화유산의 국내 보존·활용 경비 지원 시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①국가는 환수 노력 ③환수된 문화유산의 국내 보존·활용 경비 지원 시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20조 (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②지원·육성 기준 및 재정 지원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②지원·육성 기준 및 재정 지원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육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제24조 (공로자 예우)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로자 예우 가능 ②공로자의 기준과 예우 절차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①국가유산청장은 공로자 예우 가능 ②공로자의 기준과 예우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27조 (과태료)	유사 명칭 사용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유사 명칭 사용 시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본 검토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에 검토 의견은 전용기 의
원안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음⁴⁾.

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K4J0R7Q2M2L1K5I2Q0P3O7M9V5W6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외문화유산 관리(안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 제정안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는 각각 국외문화유산의 조사·연구, 보존, 홍보·선양, 환수, 보존·활용 및 환수 활동 지원, 그리고 공로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정춘생 의원안	전용기 의원안
제11조(국외문화유산의 조사·연구)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출처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해당 국외문화유산에 대	제11조(국외문화유산의 조사·연구)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출처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활동에

한 제1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재외공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국외문화유산의 보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환경 개선 및 보존을 위한 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국외문화유산의 홍보·선양)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해당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제1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재외공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국외문화유산의 보존) ①국가는 국외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국외문화유산의 홍보·선양)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이 우리 민족문화를 홍보·선양하는 데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환수 성과 등을 전시하고 홍보·교육하기 위하여 전시관이나 홍보관, 역사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홍보·선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 및 재외 한인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홍보·선양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국외문화유산의 환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이 처한

①국가는 국외문화유산이 우리 민족문화를 홍보·선양하는 데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홍보·선양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환수 성과를 전시하고 홍보·교육하기 위하여 전시관이나 홍보관, 역사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홍보·선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 및 재외 한인단체의 활동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18조(국외문화유산의 환수) ①국가는 국외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이 처한 상황에 따라 환수 전략

상황에 따라 환수 전략을 수립하고, 협상·구입·기증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하여 국외문화유산의 환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수된 문화유산이 국내에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공로자 예우)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을 수립하고, 협상, 구입, 기증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하여 국외문화유산의 환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환수된 문화유산이 국내에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공로자 예우) ①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 등

자에게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로자의 기준과 시상 등 예우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u> 로 정한다.	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로자의 기준과 시상(施賞) 등의 예우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한다.
---	---

- 종합적으로 보면 정춘생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국외문화유산을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반면, 전용기 의원안은 국가유산청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 주도의 체계를 강조하고 있음. 각 조항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제정안 제11조(국외문화유산의 조사·연구)에서 정춘생 의원안은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모두에게 조사·연구의 주체는 물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재외공관 조사 요청, 경비 지원의 권한까지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폭을 넓히고 있음. 반면, 전용기 의원안은 조사·연구의 주체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동일하지만, 자료 요청, 재외공관 조사 요청, 경비 지원의 권한은 국가유산청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음.
- 안 제11조에 대하여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국가유산청** : 국외문화유산의 조사·연구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를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함. 다만, 제정안 제11조제3항의 경우 제1항의 조사·연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되고, 제3항과 같이 대한민국재외공관을 국외문화유산 조사의 주체로 설정함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3항을 삭제함이 바람직함. 또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경우 사유재산이거나 외국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비밀유지에 관한 협약이 체결 등 협조에 대한 제약사항을 있을 수 있어,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를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 : 안 제11조제2항은 동 법안 내 각종 자료·정보제공 협조 요청 관련 문구 통일(동법 제6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과 함께, 대상 기관의 제반 상황 내 원활한 협조 등을 고려하여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이 필요함. 그리고, 안 제11조는 국가유산청만 국외문화유산 관련 조사·연구를 총괄하며 관련 정보를 협조 받아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량의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과 환수와 관련 사업 추진 시, 국가유산청이 자체적으로 조사 혹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협조받아 구축하고 있는 국외문화유산 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의 취지에 맞게 각종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조항의 신설이 필요함.

- **외교부** : 안 제11조제3항은 재외공관에 협조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에도 사전에 외교부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 인바, 추후 외교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동 규정의 추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 다음, 제정안 제15조(국외문화유산의 보존)와 관련하여 정춘생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외문화유산 보존에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보존 환경 개선 및 수리 비용 지원 주체로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모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존 활동 지원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한편, 전용기 의원안은 국가의 국외문화유산 보존 노력을 강조하고, 관련 비용 지원 주체를 국가유산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음, 제정안 제16조(국외문화유산의 홍보·선양)에 대하여 정춘생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홍보·선양에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전시관 설치, 재외동포 지원, 홍보·선양 비용 지원의 주체를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넓게 인정하고 있고, 전용기 의원안은 국가의 국외문화유산의 홍보·선양에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홍보·선양 비용 지원, 전시관 설치, 재외동포 지원의 주체를 국가유산청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6조에 대하여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국가유산청 : 국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국내 문화유산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환수유물’ 또한 문화유산 지정가치 검토 절차를 통하여 ‘문화유산 지정’ 후 ‘국내 문화유산’의 지원 체계 안에서 적용함이 바람직하고, 특정 국외문화유산의 홍보를 위한 전시관이나 홍보관, 역사관 등의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유발 및 난립 가능성 등 사회경제적 비효율 야기할 수 있고 기존 문화유산의 전시기능을 지닌 국·공립박물관 및 역사관의 기능과 중첩되므로 기존 전시관을 활용함이 바람직하므로 안 제16조제2항의 삭제가 필요함. 한편, 재외동포 및 재외 한인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과 관련해서는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출범 '23.6)이 있음을 고려하여 안 제16조제3항의 삭제가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 : 안 제16조제2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외문화유산 환수성과의 전시·홍보·교육을 위한 전시관·홍보관·역사관 신규 설립은 무분별한 기관의 난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공립 박물관 및 공립역사관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필요함.

- **외교부** : 안 제16조제3항과 관련하여 재외동포 및 재외 한인단체 등에 의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국외문화유산 관련 활동에 관해서는 해당 국가와의 외교 관계, 해당국의 관련 법령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추후 외교부와 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동 규정의 추가 여부를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삭제가 필요함.

○ 다음, 제정안 제18조(국외문화유산의 환수)에 대하여 정춘생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환수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환수 전략 수립 및 추진, 환수된 문화유산의 국내 보존·활용을 위한 경비 지원의 주체를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지정하고 있음. 이에 비해 전용기 의원안은 국가가 국외문화유산 환수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환수 전략 수립 및 추진, 환수 문화유산의 국내 보존·활용을 위한 경비 지원의 주체를 국가유산청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8조제2항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은 ‘환수전략’의 경우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및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부분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중복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다음, 제정안 제20조(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환수 활동의 지원)에서는 두 의원안 모두 지원·육성 주체로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춘생 의원안은 선정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음. 반면에 전용기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제정안 제24조(공로자 예우)에서는 정춘생 의원안은 공로자 예우 주체를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께 명시하고, 공로자 기준 및 예우 절차 등을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추가하고 있고, 전용기 의원안은 공로자 예우 주체를 국가유산청장으로만 명시하고,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만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 국외문화유산의 출처 확인 및 조치(안 제12조)

- 제정안 제12조는 국외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할 목적으로 외국 박물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 유물의 출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국가유산청장은 지원 현황이나 출처 확인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처 조사 결과 과거에 불법적으로 반출·반입된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시효취득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생 의원안	전용기 의원안
제12조(국외문화유산의 출처 확인 및 조치) ①국외문화유산을 보존·활용 및 환수할 목적으로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개인 소장자 등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사전에 해당 국외문화유산의 출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처를 확인하는 경우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과 관련 지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지원 현황이나 출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제12조(국외문화유산의 출처 확인) ①국외문화유산을 보존·활용 및 환수할 목적으로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개인 소장자 등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사전에 해당 국외문화유산의 출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과 관련 지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지원 현황이나 출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u>④출처 조사 결과 과거 불법적 수단으로 반출·반입된 경우에는 점유에 따른 시효취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불법적 수단이란 침략시 약탈, 강점시 강탈, 도굴·도난 등 정상적인 수단에 반하는 행위로 취득한 것을 말한다.</u>	한다.
---	------------

- 정춘생 의원안은 제12조제4항을 통해 불법적인 수단으로 반출·반입된 국외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점유에 따른 시효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는 침략, 강점, 도굴, 도난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취득된 문화유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취지로 보임. 반면, 전용기 의원안에는 이와 같은 시효취득 불성립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음.
- 또한, 제12조제3항에서 정춘생 의원안은 국가유산청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용기 의원안은 국가유산청장에게만 해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국가유산청은 제정안 제12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의 의미 해석에 있어, 확보된 예산 없이 그러한 의도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보다 분명한 의미 전달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등의 예산을 지원하는”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출처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협약(유네스코 1970년 문화재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에서도 관련 예산을 지원할 때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국외문화유산의 출처를 확인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법률 이행의 수준에 관한 문구 수정이 필요하며, 제정안 제12조 제4항의 시효취득 배제규정은 국제사법·민법 등 관련 법체계와 충돌할 여지가 있고, 입법시 법 적용 실효성이 낮아 수용하기 어려움.
- 법무부는 제정안 제12조 제4항의 시효취득 배제규정은 국제사법·민법 등 관련 법체계와 충돌할 여지가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시효취득 관련】

- (시효취득 법리) 민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하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일본·독일 등 다수의 국가 역시 그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음
 -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 판례는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 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 (국외문화유산의 시효취득 가부) 우리 민법에 의하더라도, 국외문화유산을 직접 약탈, 강점시 강탈, 도굴·도난하여 그 점유를 취득한 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 그로부터 국외문화유산을 양수받아 점유한 자는 약탈·강탈 등의 사실을 알고 양수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가 인정될 것이고,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시효취득이 성립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민법의 예외)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문화유산이 과거 불법적 수단으로 반출·반입된 경우에는 점유에 따른 시효취득이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 그 문언상 국외문화유산의 현재 점유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시효취득을 배제하는 취지로 보이고, 이는 우리 민법 제246조의 중대한 예외로 평가될 수 있음
 - ※ 한편, 개정안 제12조 제1항에 따른 출처 조사를 진행한 경우에만 동조 제4항의 시효취득 배제 규정이 적용 되는 것인지, 혹은 국외문화유산 일반에 대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인지 등 그 입법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음
- (진정소급입법) 특히, 이미 시효취득으로 인해 문화유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 시효취득을 배제하는 것은, 새로운 입법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
 -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두60020 판결 등), 소급입법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준거법 관련】

- 한편, 국외문화유산은 외국 소재이고 외국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라 볼 수 있고, 그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률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 국제사법 부칙(2022. 1. 4. 법률 제18670호) 제3조에 의하면 국제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그 시행일인 2001. 7. 1. 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涉外사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구涉外사법 제12조는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고, 그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이 완성할 때의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
 - 우리 문화유산의 약탈·강탈은 해방 전인 1945년 전에 이뤄졌을 개연성이 크고, 따라서 국외문화유산이 소재지의 시효취득 규정에 따른 시효가 완성된 시점 역시 대부분 2001. 7. 1. 전일 것이므로, 국외문화유산의 시효취득에 관하여는 국외문화유산의 소재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준거법의 문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제사법 및 종전涉外사법에 의해 국외문화유산의 소재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 위 시효취득 배제규정을 국외문화유산에 대해 적용할 경우 준거법이 무엇인지가 다소 불분명할 우려가 있음
 - ※ 제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국제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안 제12조 조항 전체 삭제가 필요하고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국외문화유산의 출처 확인과 환수 조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첫째, 국외문화유산의 출처가 "제작, 발견, 발굴 등으로 출현한 때부터 현재까지의 소재 및 소유권 변동 이력"으로 정의되는데, 현존하는 수많은 국외문화유산의 방대한 출처 정보를 사전에 모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⁵⁾. 둘째, 안 제12조제2항에서 "출처를 확인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확인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 법령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법 적용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셋째, 안 제12조제4항은 국외문화유산의 점유에 따른 시효취득 성립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여 국내법의 일반적인 적용 범위와 효력을 넘어설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넷째, 소장품의 합법적 취득(출처 확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지면 사업 담당자들이 법률 위반을 우려해 사업 추진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소장자(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우리 문화유산의 전시가 축소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음.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제정안 제12조는 외국 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출처 조사를 규정하는 조항인데,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제4항의 내용은 제12조에서 정할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제6장 보칙 제27조(시효취득)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임.

5) 지난 40년간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약 25만 점의 국외유산 중 10만 8천점만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음.

라. 과태료(안 제27조)

정춘생 의원안	전용기 의원안
제27조(과태료) ①제23조를 위반하여 국외문화유산재단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u>50</u> <u>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 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7조(과태료) ①제23조를 위반하여 국외문화유산재단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u>40</u> <u>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 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두 제정안은 모두 제27조에서 국외문화유산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국가유산청장이 하는 것으로 동일하지만, 정춘생 의원안은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용기 의원안의 400만원보다 더 높게 책정하고 있음.

마. 기타 의견

- 기획재정부는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환수 등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도 법안 제정 실익이 없다는 의견임.
- 제정안 제19조(국제협력 및 협정 체결 등)제2항에 대하여 국가유산청과 외교부는 ‘협정’은 조약(체결권한 : 대통령)의 한 형태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기관 간 약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제19조(국제협력 및 협정 체결 등) ①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외국 소장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정의 체결 등을 통하여 인력의 국제교류 또는 공동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국외문화유산이 불법·부당하게 국외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된 국제조약에 위반되어 국외로 반출된 것은 환수되어야 한다.

④국외문화유산은 현 소재국 또는 소장기관 등에서 우리 민족문화를 홍보·선양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 제정안 제21조제5항제7호 대하여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내용은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3제6항제6호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본 제정안의 모체인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⁶⁾,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을 근거로 시행 중인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지원> 사업과 혼동될 우려가 있고, 국외문화유산이 박물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외기관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사업 지원 대상을 박물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외문화유산 소장기관”으로 대상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①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하 “국외문화유산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국외문화유산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국가는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에 관한 연구
 3.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존·관리
 4.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5.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6.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7.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8.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9.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국가유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그 밖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⑦ 국외문화유산재단은 국가유산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 ①국외문화유산의 현황 및 출처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와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을 설립한다.

②국외문화유산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외문화유산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국가는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또는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외문화유산의 현황, 출처 등에 대한 조사·연구
2.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연구
3. 국외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존·활용
4. 협력망의 운영 지원
5.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6.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7.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8.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9. 국외문화유산의 수리 및 홍보 지원
10.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 공로자에 대한 예우
11. 정보체계의 운용 지원
1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국가유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그 밖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⑥국외문화유산재단은 국가유산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⑦국외문화유산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정안 제22조(금전 등의 기부)제2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경우 자발적 기탁 금품을 접수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의 문구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제22조(금전 등의 기부) ①누구든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②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379

참고1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현황

설립근거 및 임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3에 설립근거를 둔 국가유산청 산하 법정법인(설립일: 2012. 7. 27.)
- 국외소재문화유산 반출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환수, 활용 및 전략정책 연구 등 수행

인원 및 예산

- 인 원: 정원 31명 / 현원 28명(휴직자 2명 포함)

구분	임원(상근)	1-3급	4급	5급	6급	계
정 원	1	5	8	11	6	31
현 원	1	5	7	6	9	28

-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예산 (A)	'25년 예산 (B)	증 감 (B-A)
국외소재 문화유산재 단 조사 및 환수·활용사업	기관운영	2,510	2,561	51
	국외문화유산 조사·환수·활용	3,111	3,111	-
	소 계	5,621	5,672	51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관리 및 운영		1,171	1,186	15
K-공유유산 활용 기반 구축		1,600	2,200	600
총 계		8,392	9,058	666

□ 유물 개요



- (명 칭) 관세음보살좌상
- (원소재지) 일본 대마도 나가사키현 관음사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
- (도난일자) 2012년 8~10월경

□ 주요경과

- (' 12.10월) 대마도 관음사에서 불상 도난, 국내 반입
 - 절도단 검거(12월), 불상 압수(' 13.1월)
- (' 16.4월) 서산 부석사, 불상 인도 청구 소송 제기
- (' 17.1월) 1심(대전지법), 원고(서산 부석사) 승소 판결
 - 판결 요지 : ①고려시대 서주 부석사 소재 불상이 맞음, ②왜구에 의해 불법 반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 피고(국가/대전고검), 대전고법에 항소
- (' 23.2월) 2심(대전고법), 피고(국가/대전고검) 승소 판결
 - 판결 요지 : ①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가 동일 종교단체인지 입증 불가, ②불법 반출되었다고 봐야 하나, 일본 관음사가 1953년 종교법인으로 법인격을 취득한 이후부터 도난당하기 전까지 불상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일본 민법상 취득시효(20년)가 완성
 - 원고(서산 부석사), 대법원에 상고
- (' 23.10월) 3심(대법원), 원고(서산 부석사) 상고 기각(10.26.)
 - 판결 요지 :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는 동일 종교단체로 볼 수 있으나, 일본 관음사의 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권은 관음사에 있음
- (' 25.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에 반환(5.10.)